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박정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21.

발 의 자 : 박정하 · 조은희 · 배준영
안철수 · 김승수 · 김 건
김석기 · 박성훈 · 권영진
박충권 · 김태호 · 우재준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현상, 관리, 보존상황을 조사할 수 있고, 그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소장 기관의 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임의조사 방식으로 되어 있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실태를 점검·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고,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 부적정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 담당자의 해석과 판단에 따라 조사 결과 및 개선 요구의 범위가 달라질 우려가 있음.

이에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, 관리,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,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의 적절성

판단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·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 집행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제1항 및 제2항).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 전단 중 “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”을 “국가유산청장은”으로, “조사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적절하지”를 “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) ① <u>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, 관리,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u>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	제61조(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) ① <u>국가유산청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·관리가 <u>적절하지</u>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화유산에 관한 보존·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<u>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</u> ----- ----- -----.
③ · ④ (생 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